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7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의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28794(2023. 7. 24.)]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379호

가) 예고기간: 2023. 8. 28. ~ 2023. 9. 18.(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 사전협의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원안가결)[기획예산담당관-13025(2023. 8. 25.)]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등 8건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 12. 31.로 만료되어 존속 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인 2028. 12. 31.까지를 존속 기한으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